

14. 附加價值稅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5-104號 1995. 12. 13

1. 개정취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규정하며, 납세편의 제고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특례기준금액을 년매출액기준 3천 6백만원에서 4천 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금액실명제 실시에 따른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제조, 소매 등 11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다.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중 제조(소규모자영업은 제외), 광업, 도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라. 외교관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연간 1천만원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위원회가 올림픽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경영·기술지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변호사·세무사 등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장간에 상호 연관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분 총괄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 직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신용카드세액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자.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과 정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재정경제원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